#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조례안 수정안



하 남 시 의 회

#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

발의년월일 : 2016. 7. .

발 의 자 : 의원(인)

### 1. 수정이유

○ 용어 정의중 「건축법」 인용조항을 명확히 하고자 함

#### 2. 주요내용

- 가. "건축"의 용어를 명확히 함(안제2조제3호)「건축법」제2조제8호 →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호
- 나. "리모델링"의 용어를 명확히 함(안제2조제4호)「건축법」제2조제10호 →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0호

# 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- 3. "건축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다.
- 4. "리모델링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다.

## 수정안 신·구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제 정 안  제2조(정의) (생략) 1. ~ 2 (생략) 3. "건축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8호에 따라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 4. "리모델링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 10호에 따라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 5.~ 8. (생략)	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~ 2 (현행과 같음) 3. <u>"건축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1항제8</u> 호에 따른다. 4. <u>"리모델링"이란 「건축법」 제2조제 1항제10호에 따른다.</u>

## 관계법령

#### 건축법

- **제2조(정의)**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<개정 2009.6.9., 2011.9.16., 2012.1.17., 2013.3.23., 2014.1.14., 2014.5.28., 2014.6.3., 2016.1.19.>
- 1. "대지(垈地)"란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각 필지(筆地)로 나는 토지를 말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 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.
- 2. "건축물"이란 토지에 정착(定着)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, 지하나 고가(高架)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·공연장·점포·차고·창고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3. "건축물의 용도"란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,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한 것을 말한다.
- 4. "건축설비"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·전화 설비,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,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, 가스·급수·배수(配水)·배수(排水)·환기·난방·냉방·소화(消火)·배연(排煙) 및 오물처리의 설비, 굴뚝, 승강기, 피뢰침, 국기 게양대, 공동시청 안테나, 유선방송 수신시설, 우편함, 저수조(貯水槽), 방범시설,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.
- 5. "지하층"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.
- 6. "거실"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, 집무, 작업, 집회, 오락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.
- 7. "주요구조부"란 내력벽(耐力壁), 기둥, 바닥, 보, 지붕틀 및 주계단(主階段)을 말한다. 다만, 사이 기둥, 최하층 바닥, 작은 보, 차양, 옥외 계단,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 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.
- 8. "건축"이란 건축물을 신축·증축·개축·재축(再築)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.
- 9. "대수선"이란 건축물의 기둥, 보, 내력벽,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·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- 10. "리모델링"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행위를 말한다.